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1가단118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빚고을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정규련

변 론 종 결 2021. 10. 21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각 20,936,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1.자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망 C의 소유였다.

나. 망 C은 1997. 4. 30. 사망하였고, 망 D의 처인 피고와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통틀어 ‘원고들’이라 한다)이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을 상속받았다.

다. 피고는 2020. 11. 18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. 4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고흥군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123,745,600원을 지급하고 2020. 12. 2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1.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전라남도 고흥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되 고흥군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. 피고는 손실보상금으로 123,745,600원을 수령하였고, 2021.

1. 5. 원고들에게 그 일부인 각 1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나머지 손실보상금 각 20,936,400원 $\{= 83,745,600원(= 123,745,600원 - 40,000,000원) \times 1/4\}$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21. 1. 5. 원고들에게 각 1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구두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차웅

‘별지’**부동산 목록**

1.전라남도 고흥군		, 전733㎡
2.전라남도 고흥군		, 전1156㎡
3.전라남도 고흥군		, 도로1860㎡
4.전라남도 고흥군		,도로397㎡
5.전라남도 고흥군		,도로666㎡

-이상-

선 정 자 명 단

- 1. A
 - 2. E
 - 3. F
- 끝.

